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
2020.4.22.(수) 17:00

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오문석

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0년 3월 30일

나. 회부일자 : 2020년 3월 31일

3. 제안사유

- 청구인대표 김도경 등 9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30일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청구서가 접수되어, 같은 법 제15조제9항 및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부의함

4. 주요내용

가. 목적 (안 제1조)

-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을 보상하고 증진함과 동시에 충청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
나. 도지사의 책무 (안 제3조)

-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권리 보장·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, 농민수당 정책 시행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
- 농민수당 정책수립의 농업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활동 지원 및 홍보

다. 농업인의 참여 (안 제4조)

- 농업인은 공익적가치를 인식하고, 마을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및 농생태계의 보존 등 노력

라.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(안 제5조)

- 도지사는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를 설치. 위원회는 지급대상자 결정, 지급시기 및 지급액, 각종 교육 및 홍보 등을 심의·의결

마. 지급대상 (안 제8조)

-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충청북도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범위 결정

바. 지급방법 및 지급액 (안 제9조)

- 농민수당은 지급대상에게 월 10만원의 금액을 시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, 단 시군 관내에서 사용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충북관내 사용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
- 도지사는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해당연도의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

사. 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절차 (안 제10조)

- 농업인은 지급신청서를 해당 이장에게 제출하고 이장은 실경작 사실 등을 확인하고 시장·군수는 지급대상 후보 결정
-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지급대상 결정
- 농업인은 충청북도에서 주최하는 농민수당 관련 마을교육을 이수한 뒤 농민수당을 지급받음
- 주소지와 영농구역이 다른 경우 영농구역의 마을을 선정하여 지급신청서 제출과 마을교육을 이수 할 수 있음.

아. 지원제외 (안 제11조)

- 신청 전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,700만원 이상인 농민
- 신청 전연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 사실이 있는 농민
- 신청 전연도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위반 사실이 있는 농민
- 신청 전연도 농지·산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법적 처분 받은 농민

5. 검토의견

- ‘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’은 청구인대표 김도경 등 9명으로부터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30일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청구서가 접수되어, 같은 법 제15조제9항 및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첨부하여 충청북도의회에 부의됨
- 부의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, 안 제2조제3호의 ‘농업경영체’ 정의를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‘농업인’과 ‘농업법인’이 있는데 조례안에는 ‘농업인’으로 한정했는데 이는 ‘법률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’를 변경하는 것으로 향후 ‘농업경영체’라는 법적 용어에 대한 혼란을 유발할 수 있음
- 둘째, 같은 조 제2호에 규정된 ‘농업인’의 정의와 제4호의 농민수당 지급대상자인 ‘농민’의 표현에서 용어정의를 알되 ‘농민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용어정의를 필요하다고 생각되며,
- 셋째, 안 제6조의 ‘위원회의 구성’ 중 제5항 위원회 위원 해촉규정의 제3호 ‘위원회 회의에 자주 참가하지 않거나’라는 규정의 ‘자주’에 대한 명확한 수치적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

- 넷째, 안 제8조 제1항제2호에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이 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는데, 시행령 제1항제3호의 ‘1년중 3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’,
- 다섯째, 안 제11조(지원제외) 대상에 ‘일정액 이상의 고소득 농업인’ 과 ‘일정액 이상의 고액 재산을 보유한 농업인’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
- 끝으로, 첨부된 자료 중 집행기관의 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와 「참고1」 농민수당에 대한 시·군의 의견수렴 결과 「참고2」 농민수당(선별적, 조건적) 국민·도민 공감대 부족 「참고3」 농민수당 소요예산 추정액 분석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.